|  |  |  |
| --- | --- | --- |
|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방법**교통운수부령 2018년 제24호<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방법>이 2018년 10월 8일 제16차 부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장 리샤오펑(李小鵬)2018년 10월 22일제1조 배송 채널의 안전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보장하고 우편물•택배물의 실명접수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택배잠정조례>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뤄지는 우편물•택배물의 발송•접수와 관련 감독관리의 실시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제3조 우정기업•택배기업과 우정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하'배송기업')은 실명접수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우편물•택배물 접수 시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여 발송자의 신분을 검사하고 신분정보를 등기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경우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명서에 해당된다.(1) 주민신분증, 임시주민신분증;(2) 중국인민해방군 군인 신분증, 중국인민무장경찰 신분증;(3)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거주증, 홍콩•마카오 주민 내륙 왕래 통행증, 타이완 주민 내륙 왕래 통행증;(4) 외국 공민 여권;(5)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 신분증명서.제4조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는 합법성•안전성•편민성•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제5조 국무원 우정관리부서가 전국의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성•자치구•직할시 우정관리기구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의 우정관리기구는 해당 관할구역의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제6조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우정관리기구 및 성급 이하의 우정관리기구(이하 '우정관리부서'로 통칭)는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 등과의 상호협조를 강화하고 안전 보장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여 실명접수제도의 실행을 감독하여야 한다.제7조 배송기업은 본 업체의 실명접수 관리제도와 조치를 제정하여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제8조 택배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통일된 상표•상호 또는 택배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상호 또는 택배운송장 소속기업은 실명접수의 내용•절차•안전에 대하여 통일적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제9조 우편물•택배물 접수 사업 위탁경영의 경우 위탁자는 위탁경영계약서에 수탁자의 실명접수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실명접수 작업규범을 규정하고 수탁자가 실명접수를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전항의 규정으로 인해 수탁자의 실명접수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제10조 발송자는 우편물•택배물 발송 시 본인의 유효 신분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우편물명세서•택배운송장 등 배송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제11조 편지 및 이미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하는 우편물•택배물을 제외하고, 배송기업은 우편물•택배물 접수 시 발송자가 배송명세서에 작성한 개인신분정보와 유효 신분증서상의 정보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대조를 통해 일치성을 확인한 후 배송업체는 증서의 유형과 증서번호를 기록한다. 단, 무단으로 발송명세서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배송기업과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 배송기업은 1회적으로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서를 검사하고 관련 신분정보를 등기하여야 하며 유효 신분증서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발송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배송기업은 그의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법정대표인 또는 관련 책임자의 유효 신분증서 복사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배송기업은 안전협의서와 이용자의 신분정보를 안전협의서가 종료된 후에도 최소한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그와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 명단을 우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제13조 우편물•택배물 발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배송기업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효 신분증서 정보를 대조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제14조 배송기업은 국가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국가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감독관리 플랫폼과 연결시켜야 한다. 아울러 실명접수 정보를 적시에 수집•등록•제출하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진실성•정확성•온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5조 다음 각 호의 경우 배송업체는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여서는 아니된다.(1) 발송자가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발송함에 있어 유효 신분증서 제시를 거부하거나 배송기업의 신분정보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2) 배송기업이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 접수 시 발송자가 배송명세서에 작성한 발송자의 성명과 그가 제시한 유효 신분증서가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제16조 배송기업은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보안보장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정보의 누설•훼손•분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배송기업과 그 종업원은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이용자의 신분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우편물•택배물 접수 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 정보를 매각하거나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이용자 정보 누설•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배송기업은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지의 우정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조사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배송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이용자 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경내에 저장되어야 한다.제17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배송기업의 우편물•택배물 접수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및 <택배잠정조례>에 규정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배송기업은 우정관리부서가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8조 택배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어기고 통일적인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택배잠정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제19조 배송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1) 이용자의 유효 신분증서의 유형과 번호를 무단으로 배송명세서에 기록하는 경우;(2) 규정에 따라 유효 신분증서의 복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협의서 또는 이용자의 신분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규정에 따라 이미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 명단을 우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비안(費案)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규정에 따라 요구에 부합되는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중인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시스템을 국가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감독관리 플랫폼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5)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를 적시에 수집•기록•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를 보고함에 있어 조작•은폐•누락 행위가 있을 경우.제20조 배송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제85조,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1) 이용자와 안전협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서를 검사하고 관련 신분정보를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2) 발송자의 신분정보를 위조하여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3) 발송자가 유효 신분증서 제시를 거부하거나 배송기업의 신분정보 등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4) 발송자가 배송명세서에 작성한 발송자의 성명이 발송자가 제시한 유효 신분증서와 불일치함을 발견하였음도 여전히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 제21조 우정기업•택배기업과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6조, <택배잠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1) 우편물•택배물 접수 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 정보를 매각•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이용자 정보 누설•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사건 발생지 우정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우정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종업원이 전항의 위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제22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邮件快件实名收寄管理办法**交通运输部令2018年第24号《邮件快件实名收寄管理办法》已于2018年10月8日经第16次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部长　李小鹏 2018年10月22日　　第一条 为了保障寄递渠道安全和寄递用户信息安全，规范邮件、快件实名收寄活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快递暂行条例》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交寄、收寄邮件、快件以及实施相关监督管理，适用本办法。　　第三条 邮政企业、快递企业、经营邮政通信业务的企业（以下统称寄递企业）应当执行实名收寄，在收寄邮件、快件时，要求寄件人出示有效身份证件，对寄件人身份进行查验，并登记身份信息。寄件人出示的有效身份证件包括：　　（一）居民身份证、临时居民身份证；　　（二）中国人民解放军军人身份证件、中国人民武装警察身份证件；　　（三）港澳台居民居住证、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　　（四）外国公民护照；　　（五）国家规定的其他有效身份证件。　　第四条 邮件、快件实名收寄遵循合法、安全、便民、高效的原则。　　第五条 国务院邮政管理部门负责对全国邮件、快件实名收寄实施监督管理。　　省、自治区、直辖市邮政管理机构和按照国务院规定设立的省级以下邮政管理机构负责对本辖区的邮件、快件实名收寄实施监督管理。　　第六条 国务院邮政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邮政管理机构以及省级以下邮政管理机构（以下统称邮政管理部门）应当加强与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等的相互配合，建立健全安全保障机制，监督实名收寄的落实。　　第七条 寄递企业应当制定本单位实名收寄管理制度和措施，并严格落实执行。　　第八条 使用统一的商标、字号或者快递运单经营快递业务的，商标、字号或者快递运单所属企业应当对实名收寄的内容、流程、安全实行统一管理。　　第九条 委托经营邮件、快件收寄业务的，委托方应当在委托合同中明确约定受托方的实名收寄义务，规定实名收寄的作业规范，培训、指导受托方执行实名收寄。　　前款规定不免除委托方对实名收寄应当承担的责任。　　第十条 寄件人交寄邮件、快件时，应当出示本人有效身份证件，如实填写邮件详情单、快递运单等寄递详情单。　　第十一条 除信件和已签订安全协议用户交寄的邮件、快件外，寄递企业收寄邮件、快件时，应当核对寄件人在寄递详情单上填写的个人身份信息与有效身份证件信息。信息核对一致后，寄递企业记录证件类型与证件号码，但不得擅自记录在寄递详情单上。　　第十二条 寄递企业采取与用户签订安全协议方式收寄邮件、快件的，应当一次性查验寄件人的有效身份证件，登记相关身份信息，留存有效身份证件复印件。寄件人为法人或者其他组织的，寄递企业应当核对、记录其统一社会信用代码，留存法定代表人或者相关负责人的有效身份证件复印件。　　寄递企业应当将安全协议以及用户身份信息保存至协议终止后不少于1年，并将与其签订安全协议的用户名单送邮政管理部门备案。　　第十三条 对委托他人交寄邮件、快件的，寄递企业应当核对、记录委托方和受托方的有效身份证件信息。　　第十四条 寄递企业应当使用符合国家有关要求的实名收寄信息系统，与国家实名收寄信息监管平台联网，及时收集、录入、报送实名收寄信息，并确保有关信息数据的真实、准确、完整。　　第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寄递企业不得收寄邮件、快件：　　（一）寄件人交寄信件以外的邮件、快件时，拒绝出示有效身份证件，或者拒绝寄递企业登记身份信息的；　　（二）寄递企业收寄信件以外的邮件、快件时，发现寄件人在寄递详情单上填写的寄件人姓名与出示的有效身份证件不一致的。　　第十六条 寄递企业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信息安全保障制度，采取必要防护措施，防止信息泄露、毁损、丢失。　　寄递企业及其从业人员应当对提供寄递服务过程中获取的用户身份信息严格保密，不得出售、泄露或者非法提供寄递服务过程中知悉的用户信息。　　发生或者可能发生用户身份信息泄露、丢失等情况时，寄递企业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并向事件所在地邮政管理部门报告，配合相关部门进行调查处理。　　寄递企业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实名收寄活动中收集和产生的用户信息和重要数据应当在境内存储。　　第十七条 邮政管理部门依法对寄递企业执行实名收寄情况实施监督管理，可以采取《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和《快递暂行条例》规定的监督检查措施。　　对邮政管理部门实施的监督检查，寄递企业应当予以配合。　　第十八条 经营快递业务的企业违反本办法第八条规定，未实行实名收寄统一管理的，由邮政管理部门依照《快递暂行条例》第四十一条的规定给予处罚。　　第十九条 寄递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一）擅自在寄递详情单上记录用户有效身份证件的类型、号码；　　（二）未按照规定留存有效身份证件复印件，或者未按照规定保存安全协议、用户身份信息；　　（三）未按照规定将已签订安全协议的用户名单送邮政管理部门备案；　　（四）未按照规定使用符合要求的实名收寄信息系统，或者已使用的实名收寄信息系统未与国家实名收寄信息监管平台联网；　　（五）未及时收集、录入、报送实名收寄信息，或者虚报、瞒报、漏报实名收寄信息。　　第二十条 寄递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邮政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第八十五条、第九十三条的规定给予处罚：　　（一）在与用户签订安全协议时，未按照规定查验寄件人的有效身份证件并登记相关身份信息；　　（二）伪造寄件人身份信息收寄了信件以外的邮件、快件；　　（三）在寄件人拒绝出示有效身份证件、拒绝寄递企业登记身份信息的情况下，收寄了信件以外的邮件、快件；　　（四）发现寄件人在寄递详情单上填写的寄件人姓名与出示的有效身份证件不一致后，仍收寄了信件以外的邮件、快件。　　第二十一条 邮政企业、快递企业及其从业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邮政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七十六条、《快递暂行条例》第四十四条的规定给予处罚：　　（一）出售、泄露或者非法提供寄递服务过程中知悉的用户信息；　　（二）发生或者可能发生用户信息泄露的情况，未立即采取补救措施，或者未向事件所在地邮政管理部门报告。　　经营邮政通信业务的企业及其从业人员有前款规定的违法行为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二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